의안번호	제 121	호
의 결	년 월	일
연 월 일	(제	회)
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

의 안 번 호 121

제출연월일: 2022년 10월 31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도내 다양한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자 목적
 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- 출자 근거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 출자
- 기대 효과
 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 - 지역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 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3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□ 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혁신창업팀	우경수	김왕일	송은정	220-3342

조 합 명	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				
출자대상	 ○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: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(대표 나종윤) - 유한책임조합원: 한국모태펀드, 충청북도, 신영증권, 인천시, 화성시, ㈜SRDF - 존속기간: 2022년 ~ 2030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 - 펀드규모: 250억원 ※ 한국모태펀드 137.5, 충청북도 20, 신영증권 10, 인천시 10, 화성시 18, ㈜SRDF 32.5, 운용사 22 - 투자대상: 초기창업기업 60%이상, 비수도권 지역 20%이상 - 道 투자조건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3배(60억)이상 투자이중 30억 이상은 스마트 농업 등 농업분야 투자 					
출 자 사업비	출자 예정금액: 2,000백만원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2,000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구분 출자기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펀드 출자 2022 ~ 2025 (4년간) 2,000 1,000 200 600 200					
출 자 필요성	 ○ 혁신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 및 농업,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, 육성 및 투자까지 연계한 성장지원을 통해 충북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○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투자활성화의 기초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 					
근거·법령	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④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1. 벤처투자조합					
지도감독 부 서 일견 (충 평)	 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일정비율 비수도권 출자를 추진하는 펀드로서 충북도에서 일정액을 출자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○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창업모델 구축 및 일자리 증대효과 					
첨부자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					

□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해당없음

[2]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모험자금 및 기존 벤처펀드를 통해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자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시드머니 지원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가능성 있는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
-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
-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

③ 출자금 검토

(단위: 억원, %)

출자자		전체규모	2022년 출자액	2023년 출자액	2024년 출자액	2025년 출자액	출자 비율
합 계		250	58.4	69	73	49.6	100%
	한국모태펀드	137.5	27.5	40	40	30	55%
	충청북도	20	10	2	6	2	8%
LP	신영증권	10	2	3	3	2	4%
(출자자)	인천광역시	10	2	3	3	2	4%
	화성시	18	6	6	6	ı	7.2%
	(주)SRDF	32.5	6.5	9	9	8	13%
GP (운용사)	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	22	4.4	6	6	5.6	8.8%

- 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- ※ 운용사 22억 출자: 업무집행조합원(GP)이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의무

[근거법령]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□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구브	출자	2,000백만원
주관부서 경제기업과		7 ਦ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도에서 마중물 투자를 실시하여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 및 기반 마련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출자개요

- 사 업 명 :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
- 운 용 사 :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(대표 나종윤)
- 존속기간 : 2022년 ~ 2030년(8년) ※투자기간 4년
- 조성규모 : 250억원
- 한국모태펀드^{국비} 137.5, 충청북도 20, 신영증권 10, 인천시 10, 화성시 18, ㈜SRDF^{이차전지전문회사} 32.5,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^{운용사} 22
- 道 출자금액: 20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/ 4년간)
- 투자대상 : 초기창업기업 60%이상, 비 수도권 지역에 20%이상
- 道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3배(60억)이상 투자 이중 30억 이상은 스마트 농업 등 농업분야 투자

□ 산출기초

○ 펀드 총 출자약정 내역 : 250억원

			, -	_ // /	′
구 분	계	모태펀드(국비)	도비	기타	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25,000	13,750	2,000	9,250	

○ 도 출자계획 : 20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출자기간	계	′22년	′23년	′24년	′25년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′22~′25	2,000	1,000	200	600	200

[※]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□ 기대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→성장
 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내 기업의
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지역 출자를 추진하는 펀드로 충북도에서 함께 출자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출자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비수도권 투자활성화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모태 펀드^{국비}에 도가 출자 약정한 사업으로 미 승인 시 향후 충북도의 펀드 참여 어려움 발생
- 도내 창업·벤처기업들이 펀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소멸 우려

관 련 법 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4. 한국벤처투자조합

※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벤처기업법) 제4조제5항은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벤처투자법) 제정('20.2.11.)으로 벤처투자법 제71조로 이관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